

전주지방법원 2018. 2. 9 선고 2017가단363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18. 11. 22 선고 2018나2342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18. 2. 9 선고 2017가단3637 판결

전문

원고 1.a

2.b

피고 주식회사

변론종결 2018.1.19.

판결선고 2018.2.9.

주문

- 1.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- 2.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.3.13.접수

제304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a은 2014.11.19. 주식회사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4,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사전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.4.2. 접수 제39367호로 2015.4.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).

나. 한편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.3.13. 접수 제304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.3.13. 접수 제30433호로 2015.3.13.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갑 1,5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과 판단

가. 원고들의 주장

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시를 알면서도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해우이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과 고모하여 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.

판사 김○○

부동산의 표시	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	
1.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	답 5,142㎡
2.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	답 87㎡
소유권 대지권 5229분의217.875	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	
1.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	제2동
(도로명 주소 :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)	
철근콘크리트구조(철근) 콘크리트지붕 3층 공동주택	
1층 414.1032㎡	
2층 414.1032㎡	
3층 414.1032㎡	
전유부분 : 3층 3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.9274㎡. 끝	